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대비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90호
2. 변경 시행일[설정일] : 2023. 06. 01 [설정일 : 2018. 11. 30]
3. 변경 내용

변경 조항	집합투자기구 명칭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하나대체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90호
변경 후	하나대체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90호
변경 조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협회코드 풀코드 기재
변경 전	CH941(일반),CH942(종류A), CH943(종류F)
변경 후	K55345CH9418(CH941)(일반),K55345CH9426(CH942)(종류A), K55345CH9434(CH943)(종류F)
변경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생략) 9.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의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11. (생략)
변경 후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중전과 동일) 7.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중전과 동일) 9.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의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11. (중전과 동일)
변경 조항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하나대체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90호"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③ (생략)</p> <p>④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신설></p>
변경 후	<p>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90호” 이라 한다.</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5. (중전과 동일)</p> <p>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p> <p>③ (중전과 동일)</p> <p>④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일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이 적용된다.</p>
변경 조항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p>①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p> <p>1. (생략)</p> <p>2.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채정법」 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p>
변경 후	<p>①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p> <p>1. (중전과 동일)</p> <p>2. 1억원 이상 (2021년 2월 9일 이후: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채정법」 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p>
변경 조항	제3조의3(투자권유 등)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p>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6조와 제46조의 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p>
변경 후	<p>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p>

	<p>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p>
변경 조항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p>① (생략)</p> <p>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등을 수행한다.</p> <p>③ (생략)</p>
변경 후	<p>① (중전과 동일)</p> <p>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 자산의 명칭과 수량 등의 일치 여부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p> <p>③ (중전과 동일)</p>
변경 조항	제8조(신탁금의 납입)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p>①~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8 제3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p>
변경 후	<p>①~③ (중전과 동일)</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p>
변경 조항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변경 전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변경 후	<p>① (중전과 동일)</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p>

	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시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전과 동일)
변경 조항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① (생략)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다. (생략) 라. <신설> 3.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변경 후	① (중전과 동일) 1. (중전과 동일)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다. (중전과 동일) 라. 그 밖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도 또는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 시 그 매도금액 총액을 3.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전과 동일)
변경 조항	제17조의3(부동산 업무의 위탁) -법 개정사항 반영('21.05.20)
변경 전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2호 다목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변경 조항	제19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①~⑦ (생략) ⑧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 제5항 5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

	리회사로 하여금 매일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하여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⑦ (종전과 동일) ⑧ <삭제>
변경 조항	제19조의2(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p>제19조의2(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p> <p>① 이 투자신탁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조의8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 받는다.</p> <p>② 신탁업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핵심상품설명서(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신탁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p> <p>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핵심상품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p>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변경 조항	제20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법 개정사항 반영('21.06.16, 21.10.21)
변경 전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신설></p>

변경 후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 이하(단,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2. (중전과 동일)</p> <p>②~③ (중전과 동일)</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총수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 총수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p>
변경 조항	제25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 기준가격[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④ (생략)</p>
변경 후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 기준가격[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④ (중전과 동일)</p>
변경 조항	제27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생략)</p> <p>3. <신설></p> <p>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신설></p> <p>③ <신설></p>
변경 후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재무상태표</p> <p>2. (중전과 동일)</p> <p>3. 자산운용보고서</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p>

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기결산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산, 팩스, 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조항 제 33조(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변경 전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변경 후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의 경우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변경 조항 제 34조(보수)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투자운용인력 변경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26조에 의한 매 회계기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기본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2. (생략)
 ③~⑤ (생략)
 ⑥ 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은 다음과 같다. 단, 담당 투자운용인력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1. 투자운용인력의 운용현황 및 경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 자산 규모	
김낙영	1975	팀장	15	4,401 억원	삼정 KPMG GE Capital 하나자산신탁

2.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기준일 : 2018.09.30)

펀드명	설정일	성과 (연환산수익률)	비고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9호	2018.08.31.	0.49%	운용중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9호	2018.04.20	4.43%	운용중
하나대체투자QWL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0호	2017.11.03	3.01%	운용중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2017.02.21	5.35%	운용중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8호	2017.02.06	6.11%	운용중
하나대체투자1호/2호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2016.12.02.	1·2호:3.41%	운용중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26호	2016.12.07	26호:3.9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2016.09.26	9.27%	운용중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		9.40%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A	2016.07.26	8.55%	운용중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F		9.11%	
하나대체투자QW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	2016.06.15	1.13%	운용중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2016.04.06	6.58%	운용중
하나대체투자렌드칩QWL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2011.12.29	-0.41%	운용중

- ① (중전과 동일)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26조에 의한 매 회계기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기본보수를 매일 채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 1~2. (중전과 동일)
- ③~⑤ (중전과 동일)
- ⑥ 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은 다음과 같다. 단, 담당 투자운용인력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1. 투자운용인력의 운용현황 및 경력

(기준일 : 2022.12.19)

변경 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정해성	1967	부문장/ 부사장	27	1 조 4,902억원	1995.05~2001.07 CBRE Korea 2001.08~2006.10 JLL Korea 2006.11~2010.02 신영에셋 2010.03~2012.03 H&S real estate management LLC 2012.04~ 현 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기준일 : 2022.12.19)

펀드명	설정일	설정일 이후 연환산 수익률
하나대체투자렌드칩관교사모부동산투자신탁57호	2014.04.15	4.6%
하나대체투자렌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0호	2015.02.13	4.8%
하나대체투자렌드칩QWL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2011.12.29	-0.47%
하나대체투자QWL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0호	2014.12.29	-0.78%
하나대체투자QW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	2016.06.17	-0.11%
하나대체투자일만사모부동산투자신탁79호(전문)	2018.08.31	0.41%
하나대체투자일만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3호(전문)	2019.06.27	0.31%
하나대체투자일만사모투자신탁129호(전문)	2019.10.31	0.25%
하나대체투자일만사모투자신탁135호(전문)	2020.03.31	0.56%
하나대체투자일만사모투자신탁170호(전문)	2021.06.23	-0.05%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투자운용부문 투자운용1팀에서 담당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제 운용으로 상기 운용인력의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조항	제35조(기타 운용비용 등) -법 개정사항 반영('21.10.21)
<p>변경 전</p>	<p>① (생략)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8. (생략) 9. <신설> 9.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10.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1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2. 부동산 취득 또는 매각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기타 제반비용 13. 매각을 위한 경매 관련 제반비용 (경매 활성화 비용 포함) 14.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생략)</p>
<p>변경 후</p>	<p>① (중전과 동일)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8. (중전과 동일) 9.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10.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11.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1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3. 부동산 취득 또는 매각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기타 제반비용 14. 매각을 위한 경매 관련 제반비용 (경매 활성화 비용 포함) 15.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중전과 동일)</p>
변경 조항	제40조(자기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법 개정사항 반영('19.09.16 타법)
<p>변경 전</p>	<p>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p>
<p>변경 후</p>	<p>① (중전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